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50-8411~2 / 전송 (02) 750-8413
 처리부서 : 농수산유통과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5층 515호) 담당 운문경

문서번호 농유51301-694

시행일자 1997. 3. 19.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취급	시	농수산유통과
보존		제1997-22호
지역경제국장	전결	운문경
농수산유통과장		법무담당관실사필
유기농업계장		
기안	운문경	운문경

제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농지관리위원회통합설치 및 농지임차료상한기준 등을 정하는 농지법이 제정·시행(96.1.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91.6.27 조례2779호)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공보관(공보담당관)

제목 시보 게재의뢰

다음과 같이 시보에 게재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공고

나. 게재명 :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입법예고

다. 근거법규 :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

붙임 : 공고문 3부. 끝.

지역경제국장

301 299

(제 3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조례개정 의견조회

농지관리위원회통합설치 및 농지임차료상한기준 등을 정하는 농지법이 제정·시행('96.1.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91.6.27 조례2779호)를 별첨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니 구청장의견과 농지면적 사항을 조사하여 '97.3.31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시도 의견 없음을 통보바람)

<농지면적 조사양식>

행정동별	농지면적(ha)	경작면적(ha)	미경작면적(ha)	비 고
				농지지역내 전, 담, 과수원 해당

- ※ 1. 농지가 소재하지 않은 구는 통합위원회설치에서 제외됨(통합위원회에서 제외된 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불가하니 농지면적을 세밀히 조사하여 제출바람)
- 2. 택지개발사업승인지역 및 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의한 도시계획제정비 승인지역등은 조사제외

붙임 :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처 서구01~25(농지관리담당과장)

공 고 (안)

1318	26
김정	김정

서울특별시공고 제1997- 호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
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함
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997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의 제규정 맞도록 자치구 조례에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위원의
추천 및 위촉·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로 규
정하고, 해당 자치구 조례는 폐지 함.

나. 농지임차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함.

구 분 구 별	일반경종작물		시설원예작물		다 년 생 농 작 물				
	답	전	답	전	과수	묘목	화훼	약초	기타
중랑·동대문· 성동·광진구	500	600	700	1,000	600	1,000	1,500	500	500
도봉·성북· 강북구	20	20	400	400	500	500		500	500
노원구	40		400	400	500			500	500
은평·종로구	81	122	294	294		166	439		
	26.1								
마포구		363							
	20	25							
양천구	151.5	151.5	181.8	181.8					
	33	33	33	33					
강서구	181	303	181	303					
구로·금천· 관악구	166.7	303	303	303		505	303		
	30	30	30	30		32	32		
서초구	150	60	360	360	300	900	900		150
강남구	151	60	363	363	393	605	544		50
	26.6								
송파구	184	180	454	364			660		
	30	40	30	40					
강동구	181	181	424	424			151		

비고 : 구별 임차료상한증 율칸은 정액법으로서 1제곱미터당 현금지급액(원/㎡)을,
아래칸은 경율립(%)으로서 전체 수확량에 대한 현금지급비율(%)을 나타낸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농수산유통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전화 750-8411, FAX 750-841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과 위원의 정수) 법 제46조, 영 제62조
및 영 제63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명칭·관할구역과 위원회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영 제6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지원사업과 관
련된 업무, 농지임대차사업과 관련된 업무, 공사의 농가경영규모적정화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3.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농지소재지 관할동장은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법 제 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 총회, 동개발위원회 또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합의체등의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중에서 농지 및 그 임대차 관리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후보자 추천서에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표를 첨부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농업협동조합, 농수산통계사무소 출장소,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지개량조합)의 장은 농지소재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법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소속 임직원중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시장에게 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구청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기피 및 회피) ①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적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지관리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농지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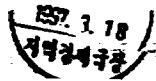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임차료의 상한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4조제5항의 위원위촉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자치구청장에 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자치구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과 위원의 정수(제2조 관련)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관할 행정구역	위원회 위원의 정수			
		계	구청장	농업인 대표	농업관련 기관 추천위원
중랑구농지관리위원회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12	1	8	3
도봉구농지관리위원회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12	1	8	3
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	노원구	12	1	8	3
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	은평구, 종로구	12	1	8	3
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	마포구	12	1	8	3
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	양천구	12	1	8	3
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	강서구	25	1	20	4
구로구농지관리위원회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13	1	10	2
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	서초구	12	1	8	3
강남구농지관리위원회	강남구	12	1	8	3
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	송파구	12	1	8	3
강동구농지관리위원회	강동구	21	1	16	4

[별표 2]

농지임차료 상한(제9조 관련)

구분	일반경종작물		시설원예작물		다년생농작물				
	답	전	답	전	과수	묘목	화훼	약초	기타
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	500	600	700	1,000	600	1,000	1,500	500	500
도봉·성북·강북구	20	20	400	400	500	500		500	500
노원구	40		400	400	500			500	500
은평·종로구	81	122	294	294		166	439		
마포구	20	363							
양천구	151.5	151.5	181.8	181.8					
강서구	181	303	181	303					
구로·금천·관악구	166.7	303	303	303		505	303		
서초구	30	30	30	30		32	32		
강남구	151	60	363	363	300	900	900		150
송파구	184	180	454	364			660		
강동구	181	181	424	424			151		

비고 : 구분 임차료상한증 율간은 경액별으로서 1제곱미터당 원금지급액(원/㎡)을,

아래간은 경율별(%)으로서 전체 수확량에 대한 원금지급비율(%)을 나타낸다.

농지관리위원회후보자 추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위 사람을 농지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199 . . .


○○ 동장

성명 (인)

첨부서류 :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

(첨부)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인 적 사 항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주소지 거주기간	19	~ 19	(년)
	5. 최종학력	학교 (졸업, 중퇴)		
	6. 주요경력			
	영 농 현 황	7. 소유농지 (단위 : m ²)		
전		답	과수원	계
				
8. 임대(임차)농지 (단위 : m ²)				
전	답	과수원	계	
9. 영농경력	19	~ 19	(년)	
10. 주재배 작 물				

위 축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축 기 간 : 199 ~ 199

귀하를 서울특별시 ○○구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99

○○ 구청장 ○○○ (인)